

2020학년도 국제대학교 선행학습 영향평가 자체평가보고서

I.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상 문항

가.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상 문항 총괄표

평가대상	입학전형	계열	입학 모집요강에 제시한 자격 기준 과목명	문 항 번 호	하 위 문 항 번 호	계열 및 교과										교과 외
						인문 · 사회			수학	과학				영 어	기 타	
						국 어	사 회	도 덕		물 리	화 학	생 명 과 학	지 구 과 학			
면접고사	일반전형, 특별전형, 농어촌출신자, 수급자 및 차상위, 성인학습자전형, 북한이탈주민, 순수외국인, 전문대이상졸업자		-	-	-	-	-	-	-	-	-	-	-	-	○	

나. 입학전형 일정

구 분	수시1차	수시2차	정 시
원서접수	2019. 09. 06.(금) ~ 09. 27.(금)	2019. 11. 06.(수) ~ 11. 20.(수)	2019. 12. 30.(월) ~ 2020. 01. 13.(월)
면접고사	2019. 10. 16.(수) ~ 10. 19.(토)	2019. 11. 27.(수) ~ 11. 30.(토)	2020. 01. 20.(월) ~ 01. 22.(수)
합격자발표	2019. 10. 31.(목)	2019. 12. 09.(월)	2020. 01. 31.(금)
충원발표 및 등록	2019. 12. 14.(토) ~ 12. 23.(월)		2020. 02. 11.(화) ~ 02. 29.(토)

다. 전형유형별 성적반영비율

모집 시기	전형구분	학과명	총점	전형방법			
				면접 고사	수능 성적	내신 성적	출결
수시1차, 수시2차	일반전형, 농어촌출신자, 수급자 및 차상위	간호과, 항공서비스학과, 유아교육과, 연예기획마케팅전공	100점 (100%)	40점 (40%)	-	40점 (40%)	20점 (20%)
정시	일반전형(수능전형), 농어촌출신자, 수급자 및 차상위	간호과, 항공서비스학과	100점 (100%)	40점 (40%)	60점 (60%)	-	-
수시1차, 수시2차, 정시	성인학습자전형, 북한이탈주민, 순수외국인, 전문대이상졸업자	전체학과	100점 (100%)	100점 (100%)	-	-	-

II. 선행학습 영향평가 진행 절차 및 방법

가. 대학별 고사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이행 사항 점검 체크리스트

구분	판단기준		
	항목	세부내용	점검 결과
대학별 고사 시행 관련 이행 사항 점검	1. 관련 자료의 홈페이지 게시	① 기간 내 선행학습 영향평가 자체평가보고서 공개 (문항과 답안 공개의 충실성)	O
	2.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항목 준수	② 문항 총괄표 작성의 충실성	O
		③ 문항 제출 양식(문항카드) 작성의 충실성	해당없음
		④ 장별 내용 제시 여부	O
	3. 선행학습 영향평가 위원회 구성	⑤ 위원회의 외부위원 포함 여부	O
		⑥ 현직 고등학교 교사 포함 여부	O

나.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대한 대학의 자체 규정

1)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0조(대학등의 입학전형 등) ① 대학 등의 장은 「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입학전형에서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를 말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학등의 장은 제1항의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경우 제10조의2에 따른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대학 등의 장은 제2항의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해당 대학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2) 국제대학교 학칙 14조의 3 및 「대학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규정」

제14조의3(대학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 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대학별고사(면접·실기고사 등)를 실시하는 경우 선행 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 대학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5.3.31]

다. 선행학습 영향평가위원회 조직 구성

1)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의 2

제10조의2(대학등의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 ① 대학등의 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영향평가 실시 방법,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대학등의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위원 중 1명 이상은 현직 고등학교 교원으로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 5. 29.]

2) 대학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6조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입시홍보처장이 되고, 위원은 전문지식을 갖춘 본교의 교직원 및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는 입시홍보처에서 관장하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입시홍보처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 심의 한다.

1. 대학별 고사의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여부에 관한 사항
2. 선행학습영향평가의 평가영역, 내용, 방법 및 진행절차에 관한 사항
3. 선행학습영향평가결과에 따른 대학별 고사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선행학습영향평가결과의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에 관한 사항
5. 선행학습영향평가결과 보고서 작성
6. 기타 선행학습영향평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 구성 현황

구 분	소 속	성 명	직 위	비 고
내부위원	국제대학교	이 동 근	입시홍보처장	
		김 경 에	평생교육원장	
		심 성 희	유아교육과 학과장	
		남 진 수	전임교원	
		오 양 환	전임교원	
외부위원	**고등학교	구 * 경	**고등학교 교육과정부 부장	

라. 2020학년도 선행학습 영향평가 일정 및 절차

- 1) 평가기간: 2020. 03. 26.(목) 15:00 ~ 16:00
- 2) 평가위원: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장 1명, 위원 5명 / 총 6명
- 3) 평가방법: 선행학습 영향평가의 취지를 고려하여 면접고사의 적절성 검토

Ⅲ. 고교 교육과정 범위 및 수준 준수 노력

- 가. 출제 전 : 우리대학은 학생 선발에 면접고사를 활용하여 인성과 전공에 대한 열정 등을 정성 평가하고자 함
- 나. 출제과정 : 질문 내용은 직접적으로 정답을 요하는 질문이 아닌 학생 개인의 인성 및 가치관에 대한 내용으로써, 일반고등학교 교육 수준 이상의 질문은 삼가도록 함
- 다. 출제 후 : 면접고사 실시 전 학과별 면접 질문내용을 미리 조사하여 영향평가위원회에서 면접 문항에 대한 사전 점검하도록 함. 사교육 유발을 방지하고자 고등학교 교육과정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선행학습과 관련 없는 인성 및 취업역량요소 중심의 면접고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입학전형을 수립도록 함

Ⅳ. 문항 분석 결과 요약

- 가. 면접고사를 실시하는 모든 학과(전공)의 질문 문항은 인성 및 전공적합성, 개인의 가치관 등을 평가하는 내용으로 고등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벗어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사항이 없음
- 나. 면접위원은 지원학생의 해당 전공 및 분야에 대한 학업수행 목적, 열의 등을 나타내는 “꿈”과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전공적합성 및 인성, 즉 “끼”를 평가한 것으로 전공교과지식에 대해 묻는 면접이 아니며, 사교육 방지를 위한 공교육정상화법 취지에 따라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상의 질문을 제시하거나, 선행학습이 유발되도록 한 평가내용은 없음

V. 대학 입학전형 반영 계획 및 개선 노력

가. 2020학년도 선행학습 영향에 대한 분석

구분	운영여부 (○/×)	선발인원 (정원내/외)	영향평가 대상여부 (○/×)	영향평가 제외사유
논술	×	×	×	미 실시
적성검사	×	×	×	미 실시
면접고사	○	723명 (201명/522명)	○	
실험고사	×	×	×	미 실시
교직적성·인성검사	×	×	×	미 실시
신체검사	×	×	×	미 실시
실기고사	○	244명 (240명/4명)	×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영향평가 제외대상
기타	×	×	×	미 실시

나. 면접고사 운영현황(2020학년도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상 고사)

1) 면접고사의 선행학습 영향에 대한 대학의 분석

가) 대상요소 : 면접

나) 대상요소의 활용 : 질의응답을 통하여 학생의 인성 및 전공적합성, 가치관 등을 종합 평가

(1) 수시모집 활용 : 간호과, 항공서비스학과, 유아교육과, 연예기획마케팅전공, 아동보육학과(성인학습전형), 사회복지학과(성인학습전형), 농어촌출신자, 수급자 및 차상위, 북한이탈주민, 순수외국인 전형에 활용

※ 면접점수 반영비율 40% 또는 100% 반영

(2) 정시모집 활용 : 간호과, 항공서비스학과, 아동보육과(성인학습전형), 농어촌출신자, 수급자 및 차상위, 북한이탈주민, 전문대이상 졸업자, 순수외국인 전형에 활용

※ 면접점수 반영비율 40% 또는 100% 반영

다. 2021학년도 입시 반영계획

- 1) 국제대학교는 지원학생의 해당 전공 및 분야에 대한 학업수행 목적, 열의 등을 나타내는 “꿈” 과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전공적합성 및 인성, 즉 “끼” 를 평가하기 위해 전공교과지식에 대해 묻는 면접고사를 지양
- 2) 사교육 방지를 위한 공교육정상화법 취지에 따라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상의 질문을 제시하거나, 선행학습이 유발되지 않도록 지속적 관리를 실시

대학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 2015. 3. 3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14조3에 의거하여 대학입학 전형의 선행학습 영향평가의 시행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본교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면접고사에 해당하며, 예체능 계열의 실기고사는 예외로 한다.

제3조(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설치) 제2조에 의거 대학별 고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는지 여부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요인은 없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입시홍보처장이 되고, 위원은 전문지식을 갖춘 본교의 교직원 및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는 입시홍보처에서 관장하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입시홍보처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5조(위원회 임기)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 심의 한다.

1. 대학별 고사의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여부에 관한 사항
2. 선행학습영향평가의 평가영역, 내용, 방법 및 진행절차에 관한 사항
3. 선행학습영향평가결과에 따른 대학별 고사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선행학습영향평가결과의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에 관한 사항
5. 선행학습영향평가결과 보고서 작성
6. 기타 선행학습영향평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회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영향평가의 시기 및 반영) ① 선행학습영향평가는 해당 대학별 고사가 종료된 이후에 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모집시기(수시 및 정시)별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선행학습영향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의 공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의거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계획을 본교 입시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한다.

제10조(수당 등 지급) ①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선행학습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게 조사 등을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타) 자체영향평가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